

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
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**

**1. 회부경위**

- 가. 의안번호 : 제522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- 다. 제출일자 : 2015. 6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15. 6. 17.

**2. 개정이유**

-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(이하 응시수수료, 20,000원)는 약 24년 전(1991.10.24.)에 정한 금액으로써 그동안의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 현 실정에는 맞지 않는 낮은 금액이라서 시험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.
- 이에 응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시수수료를 30,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 1인당 응시수수료  
10,000원 인상(안 제2조)

- 1인당 응시수수료 : 20,000원 → 30,000원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)

다. 협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입법예고(2015.4.2.~4.22) : 제출의견 없음.
-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.
- 부패영향 평가 : 해당 없음.
- 성별영향 분석 평가 : 해당 없음.

## 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창범)

### 가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522호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비용 상승 등으로, 교육청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(이하 ‘응시수수료’라 한다)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

### 나. 주요 검토의견

#### 1) 응시수수료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

- 현행 교육부령인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제21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- 당초 응시수수료 관련 사항은 동 규칙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수납하여 왔으나<sup>1)</sup> 1991년 10월 8일 상기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응시수수료 관련 사항이 시·도 조례로 위임되었고, 1991년 10월 24일 동 조례 제정 당시 20,000원으로 응시수수료가 책정되어 24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.

1) 1964년 9월 16일 동 규칙(「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정」) 제정 당시에는 응시수수료가 200원이었으며, 응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시·도 조례로 위임되기 직전인 1991년에는 응시수수료가 2,000원이었음.

- 응시수수료가 최초 규정된 이후 지난 24년 동안 물가인상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응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 2) 응시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

-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지며 1차 시험은 기입형·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, 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(실기시험 포함) 평가로 이루어집니다. 또한 예·체능과목, 과학교과 등 실기·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·실험능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.<sup>2)</sup>
-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약 24억 9천만원, 2014년에 26억 4천만원, 2015년에 약 22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는 바, 이는 평균적으로 전체 임용시험 관련 비용의 약 93.6%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응시자는 전체 소요 비용의 약 6.4%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

전국 응시수수료와 절대적 기준측면에서 비교할 때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일반 교과와 실기교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20,000원의 응시수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(표 1 참조).

- 이런 점에서 현행 교육공무원 응시수수료가 임용시험 관련 세출액 대비 10%미만의 소규모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·도교육청 중 가장 적은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응시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.

2) 「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」 제7조.

**[표1] 임용시험 비용 대비 응시자 응시수수료 부담률**

(단위: 천원)

1인당 응시수수료	학년도	선발인원 (명)	접수인원 (명)	응시수수료 징수액(A)	임용시험 관련 세출액(B)	임용시험 관련 세출액 대비 응시수수료 징수율 (C=A/B*100, 단위:%)
2만원	2013	1,286	8,697	176,000	2,486,139	7.0
	2014	1,480	7,748	156,380	2,637,182	5.9
	2015	1,041	7,070	144,080	2,232,397	6.4
총계		3,807	23,515	476,460	7,355,720	6.4

**[표2] 전국 시·도교육청 임용시험 응시수수료**

(단위: 원)

지역	응수수료(원)		비고
	일반교과	실기교과	
경기도 등 14개	25,000	35,000	*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*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: 3만원(2015년)
충남	25,000		
대전	20,000	30,000	
서울	20,000		

**3) 응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수 성장성에 대한 의견**

○ 지난 3년간 서울시교육청 전체 세입 및 자체수입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세입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 0.002%이고 자체수입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은 0.069%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.

○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20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전체 세입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이나 자체수입 대비 응시수수료 비율의 변동이 거의 없어 응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폭

은 크지 않다 하겠습니다.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입액 대비 응시수수료 징수액 현황

(단위: 천원)

회계 연도	전체 세입액 (A)	자체 수입액 (B)	응시수수료 징수액 (C)	응시수수료 징수액 대비 전체 세입액 비율 =(C/A)*100	응시수수료 징수액 대비 자체 수입액 비율 =(C/B)*100
2012	8,056,769,624	207,647,748	176,000	0.002%	0.085%
2013	8,171,202,533	226,747,246	156,380	0.002%	0.069%
2014	7,925,316,025	208,146,633	144,080	0.002%	0.069%

- 한편 시험응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50%의 응시수수료 인상은 청년 실업률의 증가, 물가 상승, 경제성장 둔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- 따라서 동 안건 심의시 수수료 인상 필요성과 세수 신장성, 그리고 시민부담의 증가등 상기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상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고, 타 시도와 같이 일반교과와 실기교과를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화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- **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**

# 관계 법령

##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

[시행 2014.8.8.] [교육부령 제44호, 2014.8.8., 일부개정]

제7조(시험의 방법) 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·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,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(실기·실험을 포함한다) 평가로 한다. 다만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(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,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.

③ 실기·실험시험은 예·체능과목, 과학교과 등 실기·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,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·실험 능력을 평가한다.

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, 교직원(敎職觀),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.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

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(實演)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.

제21조(응시수수료)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
2.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3.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